

설비건설업계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 ①

설비건설업을 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서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. 어떤 것은 시기를 맞추지 못해 벌금을 물 때도 있고, 어떤 것은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증이 많아진다. 이 때 도움을 받기 위해 관련기관 및 협회 등에 일일이 문의하기도 하지만 번거롭기 그지 없다.

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알아두면 업무처리에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벌칙을 미리 피하게 돼 경영상 이익을 가져다 준다.

본지는 설비건설업체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을 이번 호부터 연재한다. [편집자 주]

글 실는 순서
I. 건설업 관련 주요 민원 신고사항 이번호
II. 건설관련 법령 벌칙규정 다음호

I. 건설업관련 주요민원 신고사항

1. 건설업자 기재사항 변경신고

- 가. 근거법령 :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
- 나. 신고대상 :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

재사항 변경이 있는 업체

- 다. 변경내용 : 상호, 대표자, 영업소재지, 법인(주
민)등록번호,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
- 라. 신고기한 :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
- 마. 신고기관 : 영업소재지 관할구청 및 대한설비건
설협회 각 시·도회

바. 제출서류

- 건설업등록증 ·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(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5호 서식, 협회 홈페이지 참조)
-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 (개인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)
-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

사. 행정처분 : 기한내 미신고시 50만원 이하 과태료(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)

2.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

가. 근거법령 :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,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

나. 대 상 : 건설업을 등록한 자

다. 신고내용 :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(기술 능력 · 자본금 · 시설 및 장비)

라. 신고기한 : 건설업등록일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(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1년)

마. 신고기관 : 영업소재지 관할구청

바. 제출서류

-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
 - ☞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, 협회 홈페이지 참조
- 법인등기부등본
- 법인(대차대조표 · 손익계산서), 개인(영업용자산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)
- 시설 · 장비에 관한 서류

- 기술인력의 보유현황

사. 행정처분 : 기한내 미신고시 시정명령 →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 불응시 건설업 등록말소(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, 제83조)

3.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

가. 근거법령 :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, 동법 시행령 제26조

나. 대 상 :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

다. 통보주체

-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발주자에게 통보
-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(사)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

라. 통보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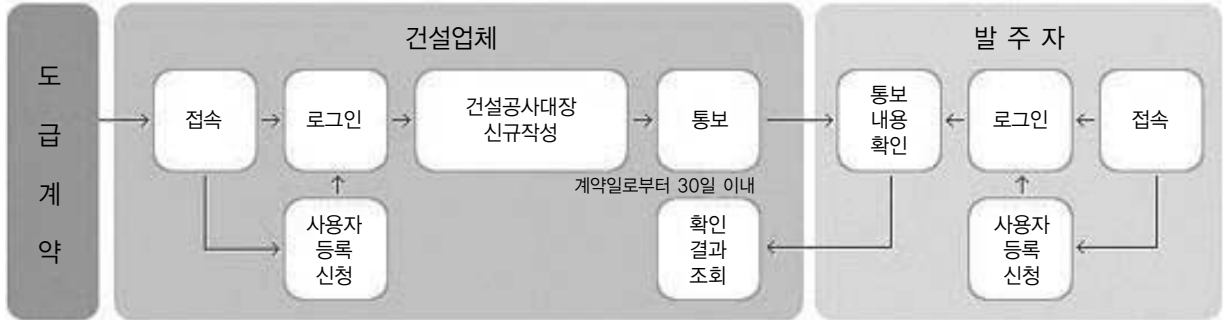
-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
마. 통보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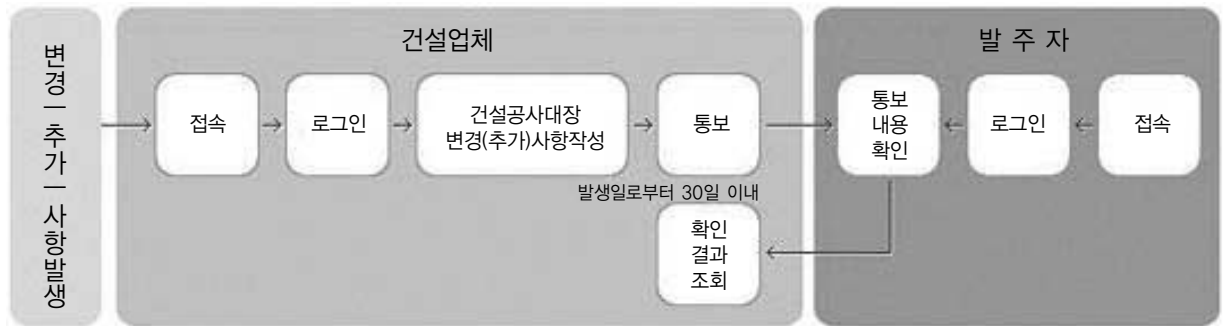
-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(KISCON)에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입력 · 통보
- [건설교통부 장관 고시 2002-274호]
- 건설공사정보시스템(CWS.KISCON.NET) : 건설공사대장 통보 기능 제공(☎. 031-380-0446)

바. 통보절차

-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



- 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



사. 행정처분 : 과태료 부과 (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. 3호의2)

- 기한내 미통보 : 100만원
- 허위사항 통보 : 100만원

다. 통보기한 :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(변경/해제)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
라. 통보기관 : 해당공사 발주자

마. 통보서류

-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/건설공사의 시공 참여자통보서 (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23호, 24호 서식, 협회 홈페이지 참조)
- 공사량(규모),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
- 예정공정표,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(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증빙서류)

바. 행정처분 : 기한내 미신고시 150만원 과태료(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. 4호)

4.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의무

가. 근거법령 :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, 동법 시행령 제32조, 시행규칙 제26조

나. 대 상 : 건설공사 하도급계약(또는 시공참여약정)을 체결한 건설업자

5.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통보 의무

- 가. 근거법령 :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, 제2항, 시행령 제30조의2
- 나. 대 상 : 1건 공사금액이 30억원 미만의 원도급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
 - ※ 해당공사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직접시공 의무 있음
- 다. 통보기한 :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- 라. 통보기관 : 해당공사 발주자
- 마. 통보서류
 -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(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22호의6 서식, 협회 홈페이지 참조)
 - 직접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·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
 - 예정공정표
- 바. 행정처분 :
 - 직접시공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6월 또는 100분의 30 이내의 과징금(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)
 - 기한내 미신고시 150만원 과태료(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. 3의3)

6. 건설기술자의 취업·퇴직상황 신고 (임의신고사항)

- 가. 대 상
 - 중전 건설기술자의 신고 의무가 폐지(2005. 7. 1)

- 되었으나, 기술자의 경력관리 등이 필요한 건설업체
 - 나. 변경시기 : 소속기술자의 입·퇴사, 상호·소재지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
 - 다. 신고기관 :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관리팀 (☎. 3416-9311)
 - 라. 제출서류 : 경력확인서 및 기술자 입·퇴사 증빙서류 (협회 홈페이지 참조)
 - 마. 유의사항
 - 건설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보유업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미달되었을 경우 반드시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로 대체(입사)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(위반시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,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)

7. 건설공사 실적신고

- 가. 근거법령 :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, 동법 시행규칙 제22조
- 나. 대 상 :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
- 다. 신고기한
 - 매년 2월 15일까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, 4월 15일까지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(기한 이후 접수 불가)
- 라. 실적신고 서식배부 및 접수처 : 대한설비건설협회 각 시·도회
- 마.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
 - 평가기준 : 건설공사실적, 자본금, 건설공사의 안전·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
 - 공시시기 :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건설 또는 협

회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고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 기재

- 적용기간 : 매년 공시일(7월 31일까지)부터 다음 연도 공시일 이전까지

※ 실적이 없는 업체도 반드시 실적신고를 하여야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음

바. 실적신고 불이행시 문제점

-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 (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)

- 공공공사의 입찰시 입찰참가 제한(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)

- 공사수주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 증명 서류의 협회 확인 · 발급 불가능

8. 건설업(신규/업종추가/양수도 · 합병 · 분할) 시공능력평가 신청

가. 근거법령 :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· 제91조, 동법 시행령 제87조

나. 대 상

신규로 전문건설업의 등록(기계설비 ·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)한 자로서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

다. 문의 및 제출처 : 대한설비건설협회 각 시 · 도 회 시공평가팀 (☎. 3284-0600)

라. 제출서류

- 시공능력평가 신청서(협회 소정양식)
-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
- 건설업등록수첩 사본
- 신청당시 제출한 기업진단서 또는 재무제표증명

원(원본)

※ 당해 회계연도 전에 설립된 업체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도 제출

※ 양수도, 합병, 분할, 상속업체의 경우 별도 제출 서류에 대한 문의 요함

- 기술자보유현황표

- 기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택1)

※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

- 재직증임을 증명하는 서류(택1)

※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

(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)

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

(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)

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

(각 지방노동사무소)

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

(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)

갑근세 납입증명서(세무대리인 확인필)

마. 기 타

서류제출시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하고 법인(사용)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, 시공능력평가액은 서류접수 후 7일 이내에 결정되며 등록수첩에 기재 받으시면 됩니다.

9.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

가. 근거법령

-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

-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 및 [별지 14]

나. 접수 · 처리

- 접수처 : 영업소재지 관할구청
- 처리기간 : 10일

다. 구비서류

- 건설업양도신고서 1부
- 양도계약서 1부
- 양수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(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) 1부
- 건설업 양도공고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 1부
-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 동의서 1부
-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서(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) 1부

라. 수수료 : 없음

10. 건설업 법인합병신고

가. 근거법령 :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,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[별지15]

나. 접수·처리

- 접수처 : 영업소재지 관할구청
- 처리기간 : 7일

다. 구비서류

- 법인합병신고서 1부
-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공고문 1부
-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
-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(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) 1부

라. 수수료 : 없음

11. 건설업 상속신고

가. 근거법령 :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,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[별지 16]

나. 접수·처리

- 접수처 : 영업소재지 관할구청
- 처리기간 : 7일

다. 구비서류

- 건설업상속신고서 1부
-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
- 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호 서류(당해 건설업등록에 관한 서류) 1부

라. 수수료 : 없음

12. 건설업등록증(등록수첩) 재교부신청

가. 근거법령 :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3항,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 및 [별지6]

나. 접수·처리

- 접수처 : 영업소재지 관할구청
- 처리기간 : 1일

다. 구비서류

- 건설업등록증(등록수첩) 재교부 신청서 1부(협회 홈페이지 참조)

라. 수수료 : 2,000원

〈다음 호 계속〉